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46호
2023. 1. 16.(월)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53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453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제453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3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언론홍보실장·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정책기획담당관”을 “의정담당관·언론홍보실장·의사담당관·법제담당관·재정분석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제4조(중전의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 교육연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4.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산실·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16. 의회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의정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담당관”을 “법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지방분권 추진 지원”을 “지방자치분권 추진 지원 및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8조(중전의 제9조)의 제목 “(예산정책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정책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6. U-신문고(의회신문고) 등 민원처리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과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8.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10. 시의회 인턴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제도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3.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장이 명하는 조사사항 처리
6.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8.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1.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2.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1조제6호 중 “세미나 등”을 “세미나 및 각 위원회의 활동상황 종합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부서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사무조정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담당관 신설(제10조), 시민권익담당관 폐지(현행 제7조)

나. 부서별 명칭 변경

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별 사무조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53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디지털 정책 분야” 를 “디지털, 문화 정책 분야” 로 하고, “디지털수석을 두며” 를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을 두며” 로 하며 “디지털수석은” 을 “디지털수석, 문화수석은” 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2호부터 제18호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9호로하고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2.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제17조의2제4항제3호부터 제11호를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로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삭제한다.

3. 어르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어르신에 대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어르신 등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제2항 중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를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동남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를 “동남권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경영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미술관 홍보 및 고객서비스 지원
- ④ 학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술관 전시 및 교육

2. 미술작품 수집·보존·관리
3. 미술작품 구입·기증·대여 등

제146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11. 청원 제도 운영 총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인사운영상 변경사항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간 업무 이관 사항 반영 및 사무분장 변경을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4급상당) 신설(제3조제2항)

－ (1명) 문화수석

나.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부서간 업무이관, 사무분장 변경 등

－ 서울시립미술관 내 체계적인 고객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고객홍보과’ 신설 및 전사·교육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전시교육과’ 재편·신설(제108조제3항, 제4항)

－ 기획조정실 내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시정연구담당관에서 기획담당관으로 이관(제10조제5항, 제7항)

－ 시민건강국 내 어르신, 취약계층대상 건강관리 업무를 정신건강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로 이관(제17조의2제4항, 제6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청원 관련 분장사무를 ‘청원 제도 운영 총괄’로 변경·조정(제146조제4항)

－ 행정수요 변화 대응을 위한 동남권추진단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직렬 조정(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 동남권추진단장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 중대재해예방과장 : 서기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서울특별시규칙 제453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관 아래에 부이사관또는서기관기술서기관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이사관또는 서기관	4	4				
부이사관또는서기관· 기술서기관	1	1				

같은 표 4급 서기관관,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기관	101	72	9	7	9	4
서기관또는기술서기관	76	56			16	4

같은 표 6급 소계관, 사서관, 방호관, 시설관, 사육운영관, 사무운영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소계	3,563	1,881	174	106	1,299	104
사서	18		1	7	10	
방호	29	14	2	1	12	

시설	577	324	3	2	230	18
사육운영	4				4	
사무운영	24	7	1	1	14	1

같은 표 7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439	1,369	124	145	1,740	61
행정	1,281	697	91	59	387	47
공업	415	26	6	12	369	2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위생란, 기계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급 소계	1,190	169	44	70	904	3
행정	143	29	13	16	83	2
사서	6			1	5	
위생	7	2			5	
기계운영	65	4		1	6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 대응 등에 따라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대응을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 행정8급 △1, 위생8급 △1, 사서8급 △1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방호6급 +1, 사서6급 +1, 행정7급 +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